

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및 지원사업 안내

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미조치 시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장 사용 제한

「대기환경보전법」제43조제1항,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
「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제31조제2항, 동법 시행규칙 제30조



덤프트럭

도로용 건설기계

조기폐차

2009년 8월 31일까지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덤프트럭, 믹서트럭, 펌프트럭

- *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덤프트럭, 믹서트럭, 펌프트럭
- * 배출가스 4등급인 경우 사용제한 대상은 아님

DPF 부착

2005년 12월 31일까지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덤프트럭

- *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 가목에서 라목까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덤프트럭
- * 콘크리트믹서-펌프트럭은 사용제한 유예(유예확인서 발급 조치)



지게차, 굴착기

비도로용 건설기계

조기폐차, 엔진교체

2004년 12월 31일까지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한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, 굴착기

- *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4호가목까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지게차, 굴착기

전동화 개조

2012년식까지이며, 세부모델은 지자체 공고문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 참조

- * tier2 기준 제작된 경우 사용제한 대상은 아님

*건설기계 저공해조치 대상의 세부적인 기준은 기후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진행

✓ 조기폐차 신청절차

- 조기폐차 신청**
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
접수 : 온라인(www.mecar.or.kr) 또는 등기우편
- 지원금액 확인**
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송부
- 대상차량 확인**
온라인 검사(www.escar.or.kr) 또는
현장검사(폐차장 입고 후 현장에서 차량상태 확인)
- 폐차 말소**
정상가동 여부 확인 후 차량 말소
- 보조금 청구 및 수령**
 - 기본 보조금 청구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
 - 추가 보조금 확인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

✓ 장치부착, 엔진교체, 전동화 신청절차

- 저공해조치 신청**
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신청하거나 신청서 제출
건설기계 소유자
- 장치부착, 엔진교체, 전동화 개조 대상 선정**
시스템을 통해 선정
지자체
- 저공해조치 대상 확인 및 적정 장치(엔진) 안내**
시스템의 신청 정보를 활용해서 안내
한국자동차환경협회
- 건설기계 상태 확인**
저공해조치 전 장비 상태 사전확인
제작사(엔진교체-개조 사업자)
- 장치 부착, 엔진교체 및 개조 등에 관한 계약 체결**
소유자-제작사(엔진교체-개조 사업자)
-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 등 완료**
주요 기능 작동-품질 점검 후 출고
제작사(엔진교체-개조 사업자)

*저공해조치를 위한 작업 외 별도 수리비나 취득세 등 별도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

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각 저공해조치 지원금을 확인하세요!



저감사업 콜센터
1544-0907



한국자동차환경협회
www.aea.or.kr